

제 7 장 통 신

제 7.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원가지향적 요율이란 원가에 기초한 요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하고, 서로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비용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공급자 이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고,
-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게 대체될 수 없는 것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회선이란 특정 고객 또는 그 밖의 이용자의 전용 사용 또는 이용가능성을 위하여 따로 둔 둘 이상의 지정된 지점간의 통신 설비를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가격 및 공급에 관한 참가요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한다.

-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공중 통신 전송 망이란 정해진 망의 종단점 양자간 또는 다자간에 통신을 허용하는 통신 기반을 말한다.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¹⁾란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모든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종단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간에 고객 정보의 실시간 전송을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보·전화·텔레ックス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 공급자란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 또는 통제되는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하며,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다른 공급자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를 포함한다.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규제기관이란 통신의 규제를 책임지는 중앙정부의 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이용자란 서비스 소비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제 7.2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통신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각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 가능한 규칙·규정 및 협약 조건에 따라, 제6장(서비스무역)의 틀 안에서 적용된다.
3. 이 장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케이블로 배급하거나 방송하

1)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에서 정의된 통신 서비스는 이 협정의 목적상,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는 것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고 있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구축·취득·임대·운영 또는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 나.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구축·취득·임대·운영 또는 공급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자국 영역 내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제 1 절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제 7.3 조

접근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양허표에 포함된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 통신 전송 망과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이 의무는 특히 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적용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개인 전용 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통과하여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 가.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공중 통신 전송 망에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 또는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 나. 개인 전용 또는 소유 회선을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나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접속하는 것²⁾

2) 인도의 경우, 현행 국내법과 관련규정에 따라 사설망과 공중통신망과의 상호접속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인도는 관련법과 규정이 변경될 경우 상호접속을 허용할 것이다.

- 다. 교환·신호 및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
- 라. 공중에 일반적으로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이외에, 모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 마. 그러한 서비스의 범위 및 형태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부합되는 한도에서 모든 전용 또는 소유 회선을 통하여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통과하여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당사국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거나 달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메시지의 보안 및 비밀성을 보장하거나 최종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가. 공중 통신 전송 망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 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 다.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쪽 당사국 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것, 또는
- 라. 그러한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그러한 접근 및 이용이 안 보 또는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아니하게 하고, 유사한 유형의 서비스 공급자 및 이용자에게 공개 가능하고 차별없이 적용되는 당사국의 법령·규칙 또는 법규 및 공공정책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6. 양 당사국이 제5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그러한 서비스의 재판매 또는 공동사용에 대한 제한
- 나.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한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 다. 필요한 경우, 그러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 라.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 마.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의 상호접속에 대한 제한, 또는
- 바. 통보·등록 및 면허

7. 이전 조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개발수준에 합치되는 범위에서, 국내 통신산업기반과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통신서비스의 국제무역에서 자국의 참여를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건을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그러한 조건은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 2 절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³⁾

제 7.4 조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다음에 관하여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자회사·계열회사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 가. 동종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이용가능성·공급·요율 또는 품질, 그리고
- 나. 상호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이용가능성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절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는 양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지배적 공급자가 되는 경우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2. 당사국은 그러한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자회사·계열사 및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가 동일한 상황에 있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그러한 대우를 평가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망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요건 하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 7.5 조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기반에 대한 접근

1. 각 당사국은 자국 내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전반적인 정책 테두리 안에서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조건 및 요율로, 다음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가. 상호접속 또는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지배적 사업자의 망세분화요소에 대한 접근

나.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상호접속 또는 망세분화요소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병설, 그리고

다.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전주·관로·도관 또는 그 당사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구조물에 대한 접근

2. 제1항의 이행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망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요건 하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 7.6 조 경쟁보장장치

통신에서 반경쟁적 관행의 방지

1. 각 당사국은, 관련 당국을 통하여, 자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경쟁보장장치

2. 제1항의 목적상, 반경쟁적 관행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반경쟁적 결과를 위하여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 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제 7.7 조 상호접속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도 규제기관의 규정에 따른 상호약정에 따라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 가. (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 비차별적인 조건 및 요율⁴⁾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그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제공된다.

4) 양 당사국은 상호접속 요율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간의 상업적으로 협상된다는 점을 양해한다.

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서비스 공급자가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하는 기간, 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 조건 및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시의 적절하게⁵⁾ 제공된다. 그리고

다.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율, 기술적 실현가능성 그리고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된다.

상호접속제안의 공개

2.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배적 사업자의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 상호접속제안 중 하나를 공개하도록 보장한다.

상호접속협상절차의 공개

3.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배적 사업자와 체결한 상호접속협정의 공개

4.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당사자인 모든 상호접속 협정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지배적 사업자와 그 밖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간에 유효한 상호접속협정에 포함된 상업적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이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의 적용을 받는 조건으로, 상호접속을 하려는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이러한 상호접속협정을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상호접속 분쟁의 해결

5.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5) 양 당사국은 시의 적절이라는 것이 개별 상호접속협상의 복잡성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고,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한다. 그러나 상호접속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가. 언제든지, 또는

나. 공개적으로 지정된 합리적인 기간 경과 후

상호접속에 대한 적절한 조건 및 요율이 사전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이에 관한 분쟁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결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국내기관
에 이의신청하는 것을 보장한다.

제 3 절 그 밖의 조치

제 7.8 조 독립적인 규제기관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분쟁해결기관이 모든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
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분쟁해결기관의 결정 및 이용되
는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한다.

제 7.9 조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
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
의한 보편적 서비스의 종류에서 위하여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 7.10 조 허가 조건

1. 허가가 요구될 경우, 각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 가. 모든 허가기준 및 허가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기간, 그리고
 - 나. 개별적인 허가의 조건
2. 허가가 거부된 경우, 각 당사국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으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거부 사유를 통상적으로 제공한다.

제 7.11 조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와 이용⁶⁾

1. 각 당사국은 주파수·번호 및 관로구축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시행한다.
2. 각 당사국은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황을 공개하여야 하나, 특정한 정부사용을 위하여 각 정부에 의하여 할당되거나 배분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공하도록 요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7.12 조 통신 분쟁의 해결 및 상소절차

이의신청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국내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시의적절하게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양 당사국은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는 것에 관한 결정과 주파수 관리는 그 자체로 제6.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한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국의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이러한 시행할 권리를 보유한다. 양 당사국은 또한 현재 및 미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권리를 보유한다.

2. 각 당사국은,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그 판정 또는 결정의 재검토를 청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적절한 당국이 그러한 판정 또는 결정을 보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청원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상소

3. 각 당사국은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그러한 판정 또는 결정을 독립적인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상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한다.

제 7.13 조 투명성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가.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결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표되거나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달리 공개되도록 할 것
- 나. 이해관계인에게 자국 통신규제기관이 제안하는 규범제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공고를 할 것과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⁸⁾, 그리고
- 다.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자국의 조치가 공개될 것
 - 1) 서비스의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 2)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 3)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에 부착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조건
 - 4) 통보·허가·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을 경우, 그러한 요건, 그리고
 - 5) 표준 관련 조치의 준비·수정 및 채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관한

7) 양 당사국은 재검토가 서비스 공급자간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간 분쟁에 대한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양해한다.

8) 이 의무는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되도록 적용된다.

제 7.14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그 밖의 장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러한 불합치의 한도에서 이 장이 우선한다.